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문 정 원[†] 김 민 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지니는 고정관념적 범죄를 확인하고, 고정관념적 범죄 일치 여부에 따라 처벌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한국 실정에 맞는 범죄 유형과 국적 집단을 제시하여 고정관념적 범죄를 파악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는 폭행,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범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각 범죄유형이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세 수준(한국, 중국, 미국)으로 조작된 단일요인 피험자 간 설계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죄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종속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예상과 달리 폭행범죄에서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 한국인과 미국인에 비해 유죄판단 비율 및 유죄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폭행사건에서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 피고인이 한국인이나 미국인인 경우에 비해 유죄율과 유죄확률을 높게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범죄사건 발생 시 공정성 확보 및 재판절차를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고정관념적 범죄, 처벌판단, 국적, 범죄유형, 외국인 범죄

[†] 제 1저자: 문정원,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심리학과 심리학 석사과정

[‡] 교신저자: 김민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E-mail: mkim76@sookmyung.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범죄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범죄 기사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한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언론 및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8월경 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한 한 영화가 상영되자 중국 동포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한희정, 신정아, 2019). 비록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판결문에 “피고 또한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낀 원고들에게 사과와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6. 선고 2018나65271 판결)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재판부 역시 해당 영화 매체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인정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국내 외국인 집단에 대한 편견이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편견이 공정해야 할 처벌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통계청(2022)에 따르면 2016년 이후로 외국인 체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으며 국내 코로나 19 발생 시점 이전인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10.7%), 태국(8.8%), 미국(7.2%)이 이 뒤를 따랐다(법무부, 2023).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전체 범죄율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범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전체 범죄자 1,749,459명 중 외국인 범죄자는 34,830명으로 약 2퍼센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10배가 넘는 수치에 해당한다(검찰청, 2021).

이에 나란히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빅카인즈에 키워드로 ‘외국인 범죄’를 넣어 분석한 결과, 외국인범죄 보도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빅카인즈, 2023).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유형인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을 키워드로 관계도를 분석한 결과(그림1 참조), 마약범죄에는 미국과 중국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중국이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빅카인즈, 2023).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형근, 장현석, 이수연(2022)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87%이며 전체 범죄 대비 외국인 범죄비율은 2.26%, 전체 강력범죄 대비 외국인 범죄비율은 3.42%에 해당된다. 즉, 외국인이 실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범죄율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범죄에 대해 특정 집단을 연관 지어 인식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백인은 횡령, 사기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흑인은 가중폭행, 자동차 절도와 같은 블루칼라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는 인종적 범죄 고정관념이 확인된 바 있다(Gordon, Michels, & Nelson, 1996). 반면 국내 연구 결과 한국인의 경우 사기범죄, 동남아 노동자의 경우 절도가 고정관념적 범죄로 확인되었으며(박희찬, 김혜숙, 2010), 외국인 집단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질적 연구에서 미국인, 동남아인, 중국인/조선족에 대해 범죄와 연관 지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수,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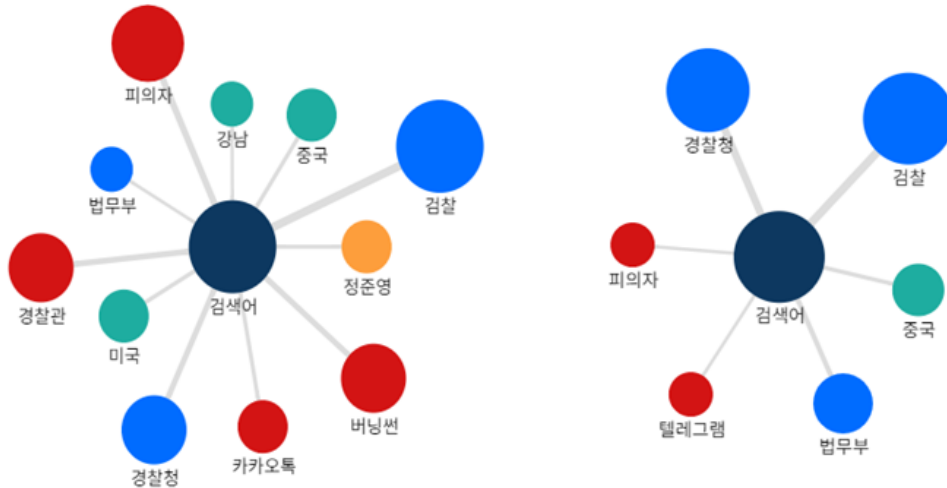


그림 1. 마약관련 기사 관계도(왼쪽)와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 관계도(오른쪽)

도환, 정태연, 2011). 특히 국내에서 중국인/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인 담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송원찬(2017)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성은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 이후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은 수법이 잔인하여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가해자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것이 밝혀져 이후 조선족과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해자가 조선족이라는 루머가 생성되었으며 중국인 혐오적 발언들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오가기 시작하였다(나진희, 2018). 하지만 이후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해당 가해자의 조선족 논란은 한국인들이 조선족에게 지니는 부정적인 편견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국내의 연구 결과와 개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람들은 특정 국적 및

인종 집단에 대해 범죄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온라인 기사 분석 결과 마약은 미국 및 중국과 연관성을, 보이스피싱의 경우 중국과 연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Lehmann(2020)과 조은경, 박지선(2021)에 따르면 사람들이 지니는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은 단순히 고정관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처벌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판단자가 지니는 고정관념과 일관되게 편향된 처벌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한국에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법과 범죄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인종/국적과 특정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이 재판에서의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적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범죄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법적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피고인의 국적 및 인종적 특성과 처벌판단

피고인의 인종 및 민족성은 배심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으므로 본인의 내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Tajfel & Turner, 2004), 동일성-관용 효과(similarity-lenency effect)는 배심원과 피고인이 유사성이 있으면 배심원이 해당 피고인에게 관용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설명한다(Kerr, Hymes, Anderson, & Weathers, 1995). 즉, 배심원들은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하는 피고인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처벌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법적 의사결정에 있어 내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판단에 그치지 않고 외집단인 피고인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도 보고된 바 있다. 피고인의 인종이 배심원의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피고인의 인종이 판단자의 인종과 다른 조건에서 피고인에게 더 긴 형량을 부과했다(Mitchell, Haw, Pfeifer, & Meissner, 2005). 또한 모의 배심원단 중 백인의 비율이 높으면 흑인 피고인의 사형선고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Lynch & Haney, 2009), 개인적으로도 백인 배심원이 다른 인종의 배심원에 비해 흑인 피고인의 사형선고를 더 많이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Shaked-Schroer, Costanzo, & Marcus-Newhall, 2008). 백인 집단과 흑인 집단의 비교 외에 백인 집단과 라틴 아메리카계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피고인의 민족성, 사회경제적 지위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백인 참가자들은 백인 피고인과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라

틴 아메리카계 피고인에 비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라틴 아메리카계 피고인에게 더 많은 유죄 판단, 긴 형량, 피고인 책임, 피고인 비난, 낮은 피고인 신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Esqueda, Espinoza, & Culhane, 2008).

한편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 피고인의 집단을 백인, 흑인, 원주민으로 나누어 민족성의 편향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판단자들의 성별의 차이가 유의했지만 참가자들은 백인 피고인에 비해 흑인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원주민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lou, Lant, & Cutler, 2013). 이렇듯 피고인의 인종 및 민족성에 따라 나타나는 처벌판단은 간혹 혼재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백인 참가자들에게 흑인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판단 및 처벌판단을 묻는 경우 편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흑인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Mazzella & Feingold, 1994; Clou et al., 2013). 일반적으로 보이는 내집단 선호 경향과는 달리 인종 문제에서 외집단 구성원에 비해 내집단 구성원을 더 평가절하하는 검은 양 효과는(black sheep effect) 참가자들이 자신이 편견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 우려와 사회적 바람직성의 작용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Hunt, 2015). 또한 혐오적 인종차별 이론(aversive racism theory)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기 때문에 인종이 명시적으로 제시될 경우 의식적으로 인종적 편향을 배제하려고 노력한다(Pearson, Dovidio, & Gaertner, 2009). 이는 특히 개별 사건에서 피고인의 인종 특성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종 특출성 효과(race-salience effect; Sommers & Ellsworth, 2009)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고인의 인종 관련 요소가 주요 사안으로 나타날 경우 사법판단에서 인종편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인종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편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흑인 피고인에 대한 우호적인 의사결정은 참가자들이 실제로는 편향을 지니고 있어도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외국인 집단에 대한 태도를 검증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은 암묵적/명시적 태도에서 백인, 흑인, 동남아인에 비해 내집단인 한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에 비해 백인, 흑인, 동남아인의 신뢰성, 사회적 거리(해당 외국인을 친구로 삼고 싶은 정도, 내집단으로 간주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노경란, 방희정, 2008). 또한 배심원 판단에 나타나는 인종적 편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판단자와 피고인의 인종이 다를 경우 유죄판단을 더 많이 내렸으며 유의한 효과가 검증되었다(Mitchell et al., 2005). 이를 종합하면 처벌판단에 있어 한국에서도 내집단 선호 현상이 나타나며 외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체류 중인 다양한 국적 집단 중 대표 집단을 설정하여 범죄유형별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범죄 유형과 피고인의 국적

고정관념적 범죄(stereotypic crime)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해당 범죄에 전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

다(Skorinko, Spellman, 2013). 이때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 성별, 인종, 국적 등이 해당된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집단과 범죄 유형을 제시한 뒤 어떤 집단이 해당 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은지 응답하게 한 결과 백인들은 가족, 마약, 금전과 관련된 범죄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흑인과 라틴 아메리카인들은 마약, 재산, 절도, 폭력범죄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Skorinko & Spellman, 2013). 한편 아시아인들은 스파이, 갱단 활동, 성매매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Skorinko & Spellman, 2013). 또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살인, 폭력, 성폭행, 강도, 사기, 횡령, 조직폭력에서는 한국인이 동남아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이 저지른다고 인식하는 반면 절도에서 한국인에 비해 동남아 노동자가 더 많이 저지른다고 인식하였다(박희찬, 김혜숙, 2010).

더 나아가 피고인이 지니는 특성이 해당 범죄에 전형적이라고 인식될 경우 판단자는 더 엄중한 처벌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인종 혹은 민족성과 범죄 유형에 따른 형량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백인에 비해 흑인이 살인, 강도/차량탈취 등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백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흑인에 비해 성범죄와 아동학대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ehmann, 2020).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Phan, Espinoza와 Sy(2022)는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계 미국인 피고인의 고정관념적 범죄가 컴퓨터 해킹임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범죄 유형에 따른 유무죄판단, 형량, 책임판단을 알아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동아시아계 미국인 피고인이 컴퓨터 해킹을 저지를 경우 더욱 높은 형량과 책임판단을 내렸다. 또한 국내에서 한국인과 동남아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남자 응답자의 경우 동남아 노동자의 절도범죄가 한국인의 절도 범죄보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박희찬, 김혜숙, 2010).

본 연구는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범죄 고정관념 일치 여부에 따라 처벌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연구와 본연구로 구성되었다. 먼저, 예비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 국적집단과 범죄유형을 설정하여 범죄 고정관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예비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범죄유형별로 피고인 국적이 처벌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법절차 공정성 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연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국적에 따라 처벌판단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어떠한 국적 집단과 범죄유형을 연합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본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비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국적과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였다. 2022년에 보도된 온라인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중국, 미국, 태국이 ‘외국인 범죄’ 키워드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빅카인즈, 2023). 따라서 예비연구의 국적 집단으로 한국, 중국, 미국, 태국을 선정

하였다. 또한 최홍만, 이재용, 박종준(2022)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범죄 중 일반 범죄(폭력, 절도), 지능범죄(사기, 횡령, 위조),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기타(마약)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대 범죄에 속하는 살인, 폭행, 절도와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마약 밀수, 디지털 성범죄를 세부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예비연구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도권 및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총 126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대학생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답한 2명의 참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24명의 참여자 중 남성이 54명(43.5%), 여성이 70명(56.5%)이 연구에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19세에서 30세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22.86세($SD = 2.20$)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목적은 한국 내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이후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참여자들이 문항을 읽고 이에 응답하는 구조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순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

항 순서를 무선화 하였다. 연구는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구가 종료된 이후 참여자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례를 제공받았다.

고정관념적 범죄의 측정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고정관념적 범죄 측정 시 특정 범죄에 대해 특정 집단이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Likert 척도 혹은 예/아니오의 이분형 척도를 사용하였다(박희찬, 김혜숙, 2011; Phan, Espinoza, & Sy, 2022; Mancini, Mears, Stewart, Beaver, & Pickett, 2015; Esqueda, 1997).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Phan, Espinoza와 Sy(2022)가 예비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번안하여 참가자들의 고정관념적 범죄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제시된 범죄를 얼마나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하였다.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제시된 범죄유형 인식에 대해 7점 Likert 척도(1= 거의 없다 ~ 7= 매우 많다)로 응답하였다. 설문지에 제시된 국적 집단은 미국인, 중국인, 태국인, 한국인의 4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범죄유형은 살인, 폭행, 절도, 디지털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밀수의 6유형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시문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미국인/중국인/태국인/한국인들이 다음의 제시된 범죄를 얼마나 저지를 것 같은지 1점(거의 없다) ~ 7(매우 많다) 사이의 점수에 응답해주시시오.”라고 안내한 뒤 문항에 범죄유형을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든 국적집단과 범죄유형에 대해 응답함으로써 문항들은 반복 측정되었으며 이때 국적과 범죄유형의 순서는 무선화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의 이해

를 돕기 위해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 보이스피싱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 마약밀수는 “해외로부터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를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범죄”로 설명하였다.

분석 방법

자료 분석에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한 뒤 국적에 따른 범죄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우선 측정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며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이후 국적에 따라 특정 범죄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Mauchly의 구형성 검정 결과 구형성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Greenhouse-Geisser ϵ 와 Huynh-Feldt ϵ 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범죄유형($F(4, 586) = 27.453, p < .001, \eta^2 = .182, \text{Huynh-Feldt } \epsilon = .953$)과 국적($F(2, 342) = 3.127, p = .029, \eta^2 = .025, \text{Huynh-Feldt } \epsilon = .928$)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범죄유형 중 마약밀수($M = 4.47, SD = 1.69$)를 다른 다섯 유형

표 1. 범죄인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전체	국적			
		한국	중국	태국	미국
살인	3.55(1.74)	3.26(1.58)	3.73(1.88)	3.60(1.64)	3.61(1.83)
폭행	4.07(1.67)	3.98(1.59)	4.03(1.79)	4.03(1.62)	4.24(1.67)
절도	3.96(1.70)	3.52(1.54)	4.27(1.93)	4.12(1.55)	3.92(1.68)
범죄유형					
디지털성범죄	3.97(1.81)	4.10(1.87)	3.77(1.79)	3.99(1.80)	4.02(1.76)
보이스피싱	4.06(2.04)	3.59(1.96)	4.42(2.18)	4.39(1.83)	3.85(2.07)
마약밀수	4.47(1.69)	4.09(1.71)	4.60(1.74)	4.47(1.59)	4.70(1.66)

의 범죄에 비해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며($p < .001$), 다른 다섯 유형의 범죄에 비해 살인($M = 3.55, SD = 1.74$)을 가장 적게 저지를 것이라고 인식하였다($p < .001$). 국적의 경우, 중국인($M = 4.14, SD = .1.91$)이 한국인($M = 3.76, SD = 1.74$)에 비해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인식하였다($p = .013$). 또한, 범죄유형과 국적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 954) = 4.064, p < .001, \eta^2 = .032, \text{Greenhouse-Geisser } \epsilon = .517$). Bonferroni 사후분석 결과, 살인의 경우 중국인($M = 3.73, SD = 1.88$)이 한국인($M = 3.26, SD = 1.58$)에 비해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절도의 경우 중국($M = 4.27, SD = 1.93$), 태국($M = 4.12, SD = 1.55$), 미국인($M = 3.92, SD = 1.68$)이 한국인($M = 3.52, SD = 1.54$)에 비해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국인($M = 4.42, SD = 2.18$)과 태국인($M = 4.39, SD = 1.83$)이 한국인($M = 3.59, SD = 1.96$)에 비해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마약밀수에서 미국인($M = 4.70, SD = 1.66$), 중국인($M = 4.60, SD = 1.74$), 한국인($M = 4.09, SD = 1.71$)에 대한 범죄인식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폭행과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국적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연구

예비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적 집단과 범죄유형에 따른 범죄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범죄유형과 국적집단 조건별로 처벌판단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한국인에 비해 중국인이 살인을 더 많이 저지르며 중국, 태국, 미국인이 절도를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중국인과 태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더 많이 저지르고 마약밀수에서는 미국인이 중국인과 한국인에 더 많이 저지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폭행, 보이스피싱, 마약밀수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폭행과 디지털 성범죄에서 국적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폭행의 범죄율

이 디지털 성범죄보다 높다는 점에서 본 조사에는 폭행을 포함시켰다. 중국인에 고정관념적인 범죄는 살인, 보이스피싱, 절도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인식이 높아 본 조사에는 보이스피싱을 포함시켰으며, 미국인에 고정관념적인 범죄로는 마약 밀수로 확인되어 이를 본 조사 범죄유형에 포함시켰다. 반면, 태국인에 고정관념적인 범죄로 절도와 보이스피싱이 나타났으나 두 유형에서 중국인에 비해 평균점수가 낮으며 한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본 조사에서는 태국인을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는 폭행,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국적(한국인, 중국인, 미국인)에 따라 처벌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폭행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에, 마약밀수 범죄에서는 피고인이 미국인일 경우 피고인에게 더 강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정리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폭행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유무죄판단 및 유죄확률, 처벌 강도, 양형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가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중국인인 집단에서 한국인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고(유무죄판단, 유죄확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며(처벌 강도), 더 긴 양형(양형 판단)을 부과할 것이다.

가설 3. 마약밀수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미국인인 집단에서 한국인인 집단에 비해 피고

인을 유죄라고 판단하고(유무죄판단, 유죄확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며(처벌 강도), 더 긴 양형(양형 판단)을 부과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국민참여 재판 배심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자들을 분석에 배제하기 위해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조작점검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참가자 620명 중 조작점검 문항을 통과한 504명(남성 252명, 여성 25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39.64세($SD = 10.49$)이며 20대 126명(25%), 30대 126명(25%), 40대 126명(25%), 50대 126명(25%)으로 분포되어있었다.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폭행, 보이스피싱, 마약밀수의 범죄유형이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세 수준(한국, 중국, 미국)으로 조작된 단일요인 피험자 간 설계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참가자들은 2022년 4월 19일 ~ 4월 23일에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모집되었다. 연구 안내문을 읽고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은 범죄유형과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구성된 9가지 종류의 시나리오 중 하나의 조건에 할당되었다. 각 조건별 참가자 수는 56명이었으며 성별과 연령대의 비율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

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읽고 조작점점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판단, 유죄확률 판단, 처벌 강도 판단, 양형 판단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문항에 응답한 후 설문이 종료되었다. 전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시나리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폭행,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범죄에 대해 각 부산고등법원 판례(2021. 11. 10. 선고 2021노210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례(2020. 10. 15. 선고 2020고단2766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례(2016. 5. 27. 선고 2015고합582 판결)를 참고하였으며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A4 1장 분량으로 제시하였다. 각 9개 시나리오의 글자 수는 국적 정보를 제외한 1,310자로 통일하였다. 외국인 피고인의 국적은 시나리오 첫 문장에 제시하였으며(예: “중국 국적자인 피고인 왕웨이”,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 로버트”) 시나리오 전반에 걸쳐 이름을 통해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시나리오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밝힌 사건 내용과 더불어 검찰 측 주장, 변호인 측 주장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처벌판단의 측정

연구 참가자들에게 범죄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게 한 뒤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판단, 유무죄확률, 처벌 강도, 양형 판단을 측정하였다.

우선, 유무죄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피고인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에 대해 유죄 혹은 무죄로 답하게 하였다. 또한 “귀하는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0%는 무죄, 100%는 유죄)”라는 문항에 대해 0%에서 100%를 5%씩 나누어 21점 Likert 척도(0 = 0% ~ 20 = 100%)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처벌 강도를 측정하였다. “피고인을 얼마나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7점 Likert 척도(1 = 처벌하면 안된다 ~ 7 = 매우 강하게 처벌한다)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무죄판단에 유죄라고 응답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양형 판단을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이 “피고인이 유죄라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형량을 ○년 ○개월의 형태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나이, 성별, 학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유형별 피고인의 국적과 유무죄판단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중국/미국 거주 개월과 종속변인(유죄확률, 처벌 강도, 양형 판단)에 대해 상관분석을 진행한 결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공변인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이때 중국에 거주한 참가자는 51명으로 평균 12.61개월($SD = 16.41$) 거주하였으며, 미국에 거주한 참가자는 57명으로 평균 12.33개월($SD = 14.81$) 거주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369명(73.2%)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65명(12.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시나리오 조건별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건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s.$).

각 범죄유형에 대한 국적별 유무죄확률, 처

표 2.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N=504$)

변인	구분	$N(\%)$
성별	남성	252(50.0)
	여성	252(50.0)
연령	20대	126(25.0)
	30대	126(25.0)
	40대	126(25.0)
	50대	126(25.0)
학력	고등학교 졸업	65(12.9)
	대학교 재학	30(6.0)
	대학교 졸업	369(73.2)
	대학원 재학 이상	40(7.9)

벌 강도, 양형 판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집단(국적)	범죄유형		
		폭행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유무죄확률	한국	12.13(5.65)	13.93(5.15)	13.55(5.01)
	중국	14.46(4.95)	13.32(5.21)	13.45(5.35)
	미국	11.86(4.40)	15.27(5.35)	12.21(5.97)
처벌 강도	한국	4.04(1.28)	4.86(1.48)	4.66(1.44)
	중국	4.43(1.25)	4.84(1.40)	5.00(1.34)
	미국	4.09(1.18)	5.36(1.26)	4.43(1.61)
양형 판단(개월)	한국	12.46(13.73)	58.96(139.31)	43.50(41.38)
	중국	20.04(25.47)	40.05(29.44)	65.00(79.13)
	미국	19.36(43.60)	76.19(108.88)	107.17(213.87)

유무죄판단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유무죄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폭행범죄에서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유무죄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 168) = 7.858, p = .020$).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85.7%로 무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인 1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이 미국인일 경우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66.1%, 무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33.9%였으며 피고인이 한국인일 경우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64.3%, 무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은 35.7%로 나타났다. 즉, 피고인이 중국인인 조건에서 유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인인 조건에서 유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이스포싱($\chi^2(2, 168) = 3.584, p =$

.167)과 마약밀수($\chi^2(2, 168) = 3.515, p = .172$)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유무죄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무죄확률

피고인의 유무죄확률에 대하여 피고인 국적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폭행범죄에서 피고인 국적에 따른 유무죄확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2, 165) = 4.563, p = .012$). 사후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인($M = 14.46, SD = 4.95$)일 경우, 한국인($M = 12.13, SD = 5.65$)이나 미국인($M = 11.86, SD = 4.40$)일 때보다 높은 유죄확률을 보였다. 즉,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 피고인이 미국이나 한국인일 경우에 비해 유죄확률을 높게 판단하였다.

표 4. 범죄유형별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유무죄 빈도(%) 차이

범죄유형	피고인 국적	유무죄판단			
		유죄	무죄	χ^2	<i>p</i>
폭행	한국	36(64.3%)	20(35.7%)	7.86	.02
	중국	48(85.7%)	8(14.3%)		
	미국	37(66.1%)	19(33.9%)		
보이스포싱	한국	49(87.5%)	7(12.5%)	3.58	.17
	중국	42(75.0%)	14(25.0%)		
	미국	48(85.7%)	8(14.3%)		
마약밀수	한국	40(71.4%)	16(28.6%)	3.52	.17
	중국	44(78.6%)	12(21.4%)		
	미국	35(62.5%)	21(37.5%)		

표 5. 범죄유형별 국적에 따른 유죄확률 차이

유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사후분석 결과
폭행	집단 간	230.369	2	115.185	4.563	.012
	집단 내	4164.911	165	25.242		중국 > 한국, 미국
	합계	4395.280	167			
보이스피싱	집단 간	111.083	2	55.542	2.028	.135
	집단 내	4518.911	165	27.387		
	합계	4629.994	167			
마약밀수	집단 간	62.036	2	31.018	1.040	.356
	집단 내	4919.107	165	29.813		
	합계	4981.143	167			

처벌 강도

각 범죄유형별 처벌 강도에 대하여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범죄유형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폭행: $F(2, 165) = .123, p = .884$, 보이스피싱: $F(2, 165) = 2.354, p = .098$, 마약밀수: $F(2, 165) = .240, p = .787$).

양형 판단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양형 판단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범죄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폭행: $F(2, 115) = .737, p = .481$, 보이스피싱: $F(2, 136) = 1.305, p = .274$, 마약밀수: Welch's $F(2, 59.433) = 2.652, p = .079$).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집단에 대한 범죄 고정관념을 살펴보고 해당 고정관념이 사건의 인식 및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과는 다르게 폭행 사건에서 국적별 유무죄판단과 유죄확률에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 유죄율이 85.7%로 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일 경우 유죄율은 6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유무죄확률에서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 한국인이나 미국인일 경우보다 높은 유죄확률이 나타났다. 비록 예비조사 결과 폭행은 특정 국적과 연합되지 않은 중립적인 범죄유형으로 나타났지만 본조사에서는 중국국적의 피고인에게 더 높은 유죄판단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과 관련된 언론의 프레임링 효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언론의 프레임이란 수용자로 하여금 제시된 사건을 특정한 방향으로

로 인식하도록 의도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이다(박미화, 김솔, 2017). 따라서 수용자들은 언론의 생산자가 의도한대로 사회현상을 편향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중국 동포에 대해 프레임 분석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 동포 관련 보도의 주요 주제 중 범죄와 관련된 기사가 전체의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김지혜, 2018). 즉, 중국 동포의 경우 범죄자 프레임이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상조와 박승관(2016) 연구에서 실제 외국인 범죄자의 비율보다 범죄기사 보도 비율이 높은 과잉재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살인과 성폭력 범죄의 강력범죄에서, 외국인 중 중국인이 행한 범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면 언론에 나타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이 유무죄판단 및 유무죄확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는 보이스포싱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중국국적자일 경우와 마약밀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미국국적자일 경우에 엄중한 처벌판단을 내릴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설과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즉, 고정관념적 범죄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Lehmann(2020)이나 Skorinko와 Spellman(2013)의 연구 결과가 반복 검증되지 않았다. 보이스포싱 범죄와 같은 사기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 비난 및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of Just World)이란 세상은 정당하며 자신이 노력하고 행동한대로 결과가 돌아온다는 개념이다(Lerner, 1980). 이 이론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온라인 사기 범죄 피해가 피해자들의 선택으로 인해 벌

어진 일이라고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인다(Nataraj-Hansen & Richards, 2023). 실제로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 역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꺼려하는 태도를 보였다(Cross, 2015). 본 연구의 보이스포싱 시나리오 중 “피고인 ○○○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약 1억 5천만원을 받아...” 라는 부분을 통해 상당한 양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인식하며 가해자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게 응답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현시점에 한국 사람들이 지니는 범죄 고정관념을 탐색하고 사법적 의사결정까지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기존 고정관념적 범죄와 관련된 국내 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외국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 범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해외 연구는 주로 백인과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적 범죄와 처벌판단에 초점을 맞췄으며 아시아인이거나 다른 비교 집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실정에 맞는 국적집단과 범죄유형을 구성하여 고정관념적 범죄와 처벌판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 폭행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직업 법관에 비해 언론 혹은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상대적으로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재판 시작 전 배심원 교육이 필

요하다(김병수, 2018).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형사사법 종사자들과 배심원들의 공정성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범죄사건 발생 시 배심원 설시에서 배심원들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등 재판절차에서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예비조사의 경우 대학생 참가자만 모집하였으므로 실제 재판상황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비록 온라인 연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실험실 연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Riva, Teruzzi, & Anolli, 2003), 재판 연구에서 대학생 표본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결과(Bornstein, 1999)가 확인된 바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고정관념적 범죄를 확인하고 실제 재판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피고인의 국적 조건 중 하나로 미국인이 설정되었는데 인종에 따라 백인과 흑인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노경란과 방희정(2009)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은 흑인에 비해 백인을 더 친구로 삼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백인에게는 선호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흑인은 비선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인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제시된 범죄 시나리오에서는 가해자가 성인 남성으로 제시되었으며 피해자의 국적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죄의 경우 시나리

오 상 공범이 존재하며 해당 피고인이 주동자가 아닌 운반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시나리오에 구현된 범죄 상황이 아닌, 해외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 유형이 중국인에 전형적인 범죄유형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부 범죄 유형, 공범유무, 가해자의 나이 및 성별, 피해자의 국적, 범죄 심각성 등의 요인이 사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검찰청 (2021). 범죄분석통계.
- 김동수, 김도환, 정태연 (2011). 외국인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인식: 6개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23.
- 김병수 (2018). 배심원 교육을 통한 공정한 국민참여재판의 실현. 법학연구, 59(3), 35-63.
- 김지혜 (2018). 한국언론의 중국동포 (조선족) 담론 분석: 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신문의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1(2), 37-73.
- 나진희 (2018. 10. 23). “이번엔 PC방 살인피의자 부모가 조선족?”...도넨은 조선족 혐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81022003765?OutUrl=naver> 에서 검색.
- 노경란, 방희정 (2008).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 및 성격, 22(4), 75-92.
- 노경란, 방희정 (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 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1), 49-79.
- 대구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고합582 판결.
- 박미화, 김 솔 (2017) 온라인 뉴스 댓글 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중국동포 혐오증: 오원춘 사건 보도 전후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3), 92-117.
- 박상조, 박승관 (2016).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3), 145-177.
- 박희찬, 김혜숙 (2010).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처벌 관련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27-49.
- 법무부 (2023). 출입국통계.
- 부산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노210 판결.
- 빅카인즈[웹사이트] (2023.02.21.).
URL:<https://www.bigkinds.or.kr/>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6. 선고 2018나65271 판결.
- 송원찬 (2017). 경계인: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 연구: 영화<황해>와 <청년경찰>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18(3), 447-468.
-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2766 판결.
- 조은경, 박지선 (2021). 살인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형사정책연구*, 32(4), 63-90.
- 최형근, 장현석, 이수연 (2022). 외국인에 의한 범죄증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15(4), 219-240.
- 최홍만, 이재용, 박종준 (2022). 외국인 범죄 동향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6, 107-119.
- 통계청 (2022). 국적/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월간, 연간).
- 한희정, 신정아 (2019).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표현의 문제-<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15(3), 109-135.
- Bornstein, B. H. (1999). The ecological validity of jury simulations: Is the jury still out?. *Law and human Behavior*, 23, 75-91.
- Clow, K. A., Lant, J. M., & Cutler, B. L. (2013). Perceptions of defendant culpability in pretrial publicity: The effects of defendant ethnicity and participant gender. *Race and Social Problems*, 5(4), 250-261.
- Cross, C. (2015). No laughing matter: Blaming the victim of online fraud.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21(2), 187-204.
- Esqueda, C. W. (1997). European American Students' Perceptions of Crimes Committed by Five Racial Group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16), 1406-1420.
- Esqueda, C. W., Espinoza, R. K., & Culhane, S. E. (2008). The effects of ethnicity, SES, and crime status on juror decision making: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European American and Mexican American mock juror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0(2), 181-199.
- Gordon, R. A., Michels, J. L., & Nelson, C. L. (1996). Majority group perceptions of criminal behavior: the accuracy of race related crime

- stereotype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2), 148-159.
- Hunt, J. S. (2015). Race, ethnicity, and culture in jury decision making.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11(1), 269-288.
- Kerr, N. L., Hymes, R. W., Anderson, A. B., & Weathers, J. E. (1995). Defendant-juror similarity and mock juror judgments. *Law and Human Behavior*, 19(6), 545-567.
- Lehmann, P. S. (2020). Race, ethnicity, crime type, and the sentencing of violent felony offenders. *Crime & Delinquency*, 66(6-7), 770-805.
- Lerner, M.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In: *The Belief in a Just World.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Springer, Boston, MA. https://doi.org/10.1007/978-1-4899-0448-5_2
- Lynch, M., & Haney, C. (2009). Capital jury deliberation: Effects on death sentencing, comprehension, and discrimination. *Law and Human Behavior*, 33(6), 481-496.
- Mancini, C., Mears, D. P., Stewart, E. A., Beaver, K. M., & Pickett, J. T. (2015). Whites' perceptions about Black criminality: A closer look at the contact hypothesis. *Crime & Delinquency*, 61(7), 996-1022.
- Mazzella, R., & Feingold, A. (1994).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Gender of Defendants and Victims on Judgments of Mock Jurors: A Meta Analysi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5), 1315-1338.
- Mitchell, T. L., Haw, R. M., Pfeifer, J. E., & Meissner, C. A. (2005). Racial bias in mock juror decision-making: A meta-analytic review of defendant treatment. *Law and Human Behavior*, 29(6), 621-637.
- Nataraj-Hansen, S., & Richards, K. (2023). Why do fraud victims get blamed? Lerner's Belief in a Just World and its application to victims of online fraud. *Journal of Financial Crime*, 30(3), 828-839.
- Pearson, A. R., Dovidio, J. F., & Gaertner, S. L. (2009). The nature of contemporary prejudice: Insights from aversive racism.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3(3), 314-338.
- Phan, D. K., Espinoza, R. K., & Sy, S. R. (2022). An aversive racism explanation for the influence of race, SES, and race-stereotypical crimes on jury decision biases against East Asian American defendants. *Journal of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20(1), 73-95.
- Riva, G., Teruzzi, T., & Anolli, L. (2003). The use of the internet in psychological research: Comparison of online and offline questionnaires. *CyberPsychology & Behavior*, 6(1), 73-80.
- Shaked-Schroer, N., Costanzo, M., & Marcus Newhall, A. (2008). Reducing racial bias in the penalty phase of capital trial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6(5), 603-617.
- Skorinko, J. L., & Spellman, B. A. (2013). Stereotypic crimes: How group-crime associations affect memory and (sometimes) verdicts and sentencing. *Victims & Offenders*, 8(3), 278-307.
- Sommers, S. R., & Ellsworth, P. C. (2009). "Race salience" in juror decision making: misconceptions, clarifications, and unanswered question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7(4), 599-609.

한국심리학회지 : 법

Tajfel, H., & Turner, J. C. (2004).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Political psychology* (pp. 276-293). Psychology Press.

1 차원고접수 : 2023. 06. 09.

심사통과접수 : 2023. 07. 23.

최종원고접수 : 2023. 07. 24.

The Effect of Stereotypic Crime and Defendant's Nationality on Legal Decisions: Focusing on Sou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Jeongwon Moon

Minchi Kim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ies examined the nationality-stereotypic crime of in the South Korea context and whether congruency between the defendant's nationality and stereotypic crime type would effect the judgment of legal decisions. Based on the pilot study which identified nationality-stereotypic crimes, the main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defendant's nationality on legal decisions in the crimes of assault, voice phishing, and drug trafficking cases. Total of 504 participants between their 20s to 50s were recruit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online survey. This study employed a 3(defendant's nationality: South Korea, China, the United States) single factor between-subjects design in each crime types.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results between defendant's nationality in voice phishing and drug trafficking cases. Furthermore, inconsistent with expectations, participants provided more guilty verdicts and higher guilty probability towards Chinese defendant than Korean and American in the assault cas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stereotypic crime, legal decisions, nationality, crime type, foreign criminal

부 록

1. 폭행 시나리오

<사건내용>

피고인 김지훈(남, 33세)은 회사에 근무 중인 직장인이며 A씨와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이다. 김지훈은 퇴근 후 2023. 2. 28. 20:30경 서울에 있는 한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두 명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A와 A의 일행은 같은 날 21:15경 김지훈의 옆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얼마 후 김지훈은 A와 A의 일행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먼저 A에게 말을 걸었고 상호 시비가 되어 둘은 서로의 목살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말다툼이 심해지면서 화가 난 김지훈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곧이어 함께 뒤엉켜 넘어졌다. 해당 사건은 김지훈과 A의 다툼이 점차 심각해지자 술집 사장이 22:03경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이 접수되었다.

<검찰 측 주장>

피고인 김지훈은 A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의거하여 처벌받아야 한다. 본 사건은 술집에서 옆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김지훈이 A에게 다가갈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술집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 증거에 비추어 보면 김지훈이 A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고 이후 둘이 함께 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는 다음날인 2023. 2. 29 9:20경 손목에 이상을 느껴 병문에 방문하였고 해당 사건 조사를 위해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손목 부분에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이는 김지훈의 행위로 발생하였으며 그는 자신의 행위가 이와 같은 상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김지훈은 폭행죄에 대해 유죄이다.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 김지훈의 행위는 A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에 대해 처벌받으면 안된다. 비록 김지훈이 A의 얼굴을 때렸으나 검찰 측에서 언급한 CCTV 영상 증거에서 김지훈보다 A가 먼저 김지훈의 목살을 잡고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법 제21조 제1항(정당방위)에 의거하여 A가 주장하는 김지훈의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A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A의 과거 진료 기록을 보면 사건 발생 약 2주 전에 이미 손목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가 주장하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손목 상해가 김지훈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김지훈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김지훈은 폭행죄에 대해 무죄이다.

2. 보이스포싱 시나리오

<사건내용>

피고인 김지훈(남, 33세)은 2023. 2. 28일 20:30경 ‘알바○○’ 어플리케이션에서 ‘고액알바’라는 홍보 배너를 보고 기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입력하였다. 이후 김지훈은 자신을 ▲▲회사의 B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에게 전화로 간단한 면접을 본 뒤 업무 설명을 받았다. B팀장은 김지훈에게 ‘근무시간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일당 50만원, 4대 보험 가능, 수당은 당일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근무 내용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건네주는 물품들을 수거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지훈은 이를 수락하여 2023. 2. 29.부터 메신저를 통해 B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검찰 측 주장>

피고인 김지훈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약 1억 5천만원을 받아 보이스포싱 조직원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의거하여 보이스포싱 범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 김지훈은 정식 채용절차를 밟지 않고 B팀장과 통화 한 통만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김지훈의 업무 난이도는 낮았으며 실제로 업무수행에 드는 시간은 극히 적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수령하였다. 이에 대해 김지훈은 이상함을 느껴 인터넷으로 ‘보이스포싱’ 및 ‘보이스포싱 처벌’에 대해 검색하기도 했다. 이렇듯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포싱 범죄라는 사실을 의심 할만한 사정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포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김지훈의 범행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김지훈은 사기죄(보이스포싱)에 대해 유죄이다.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 김지훈은 보이스포싱 범죄 조직원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안된다. 그는 B팀장으로부터 업무 설명을 들은 후 합법적인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약속된 장소에서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는 심부름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또한 김지훈은 B팀장의 지시에 따라 고객과 주고받는 물품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비록 인터넷으로 보이스포싱에 대해 검색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채팅을 통해 B팀장에게 자신의 업무가 합법적인지 물어보았으며 B팀장이 강력히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의심을 풀게 되었다. 따라서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범행에 대한 의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김지훈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김지훈은 사기죄(보이스포싱)에 대해 무죄이다.

3. 마약밀수 시나리오

<사건내용>

피고인 김지훈(남, 33세)과 그의 지인 C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이며 현재 C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김지훈은 2023. 2. 7. C씨의 부탁을 받아 알루미늄 공구 통이 들어있는 소포를 본인 주거지로 배송받고자 하였고, 2023. 2. 28. 20: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 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관실 직원이 소포 내부에 마약이 든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절단하자 투명비닐봉지에 싸인 마약의 한 종류인 펜타닐 10g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마약 등의 부정거래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감시 하에 운반 등을 실시하여 허용 및 추적을 통해 관련자를 특정·검거하는 수사방법)을 실시하여 김지훈을 체포하였다.

<검찰 측 주장>

피고인 김지훈은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였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에 의거하여 처벌받아야 한다. C씨는 채팅으로 김지훈에게 ‘공구 통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달라’고 부탁했다. 비록 친한 지인의 부탁이지만 공구 통 하나만을 국내로 들여올 이유가 없으며 이를 지하철 물품보관함이라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타인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다. 또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소포를 통제배달하기 위해 온 수사관들을 보자마자 그대로 도망쳤다. 더욱이 그가 들여온 펜타닐은 헤로인의 50~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효과를 보이며 치사율이 높은 신종마약으로 확산 시 사회적 해악과 파급효과가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김지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밀수)에 대해 유죄이다.

<변호사 측 주장>

피고인 김지훈은 C씨의 부탁으로 소포를 수령하고자 한 것이 때문에 마약밀수에 대해 처벌을 받으면 안된다. C씨는 던지기 수법(마약을 일정 장소에 숨겨놓고 매수인에게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자 하였고, 배달책으로 김지훈을 이용하고자 했다. 김지훈은 소포의 내용물이 공구 통인 것만 알았을 뿐 안에 펜타닐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 즉 그는 자신이 받고자 하는 소포가 마약밀수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검찰의 통제배달 시 도망친 것은 누군가 찾아오자 단순히 겁을 먹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범죄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김지훈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김지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밀수)에 대해 무죄이다.